

용역 입찰 공고(긴급)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용역명		통영 광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	
기초금액(원)	976,700,000	접수개시일시	2026. 7. 14.(화) 09:00
추정가격(원)	887,909,091	접수마감일시	2026. 7. 16.(목) 12:00
부가세(원)	88,709,909	개찰일시	2026. 7. 16.(목) 13:00
		개찰장소	우리로 입찰집행관 PC
용역개요	기간	착수일로부터 24개월	
	위치	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일원 (※과업지시서 참조)	
	사업개요	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1식 (※과업지시서 참조)	
	담당부서	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계획담당(055-211-6794)	
입찰 및 낙찰방법	총액입찰, 전자입찰, 지명경쟁(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) 적격심사낙찰[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]		

- ※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.
- ※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[인쇄비(13,487,600원), 출장비(6,117,100원), 시험비(1,338,500원) 부가가치세 별도] 금액은 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-580호)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,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
2.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

- 가. **경상남도 공고 제2026-908호(2026. 5. 27.)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**로 선정된 업체(**개별통보-나라장터 확인**)
- 나.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이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(공동인증서 제외)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등

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3.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

- 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± 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,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나.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, 2025.12.1.)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[별표1]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(P.Q)를 하는 기술용역 『2.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.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』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**낙찰하한율 85.495%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**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**95점**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,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적격심사항목 중 ‘가. 해당용역수행능력’의 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’은 평가를 실시합니다. 다만, 배점한도(1점)를 부여하여 개찰하고,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.(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)
- ※ **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(스캔본, 출력X)는 kk77@korea.kr로 송부바랍니다.(적격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)**
-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. 2. 3.부터 산정합니다.
-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,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‘**【붙임1】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**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체경력 :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
 - 해당경력 :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, 분야별책임기술자,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
다만,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/2을 인정
-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.
-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바.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(만점)를 적용합니다.

사.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되,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.

4. 공동수급협정서 제출

- 가.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**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.7.15.(수) 18:00까지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5.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/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/ 입찰무효

- 가.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같습니다.
- 다.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.

6.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

- 가.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, 지방계약법령, 용역계약일반조건, 특수조건, 입찰유의서,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의 1.25%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.

7.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

- 가.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 단,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,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(대금청구권)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

양도할 수 없습니다. 단,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8.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

- 가.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(☎055-211-3826), 감사위원회(☎080-211-0999) 및 홈페이지(www.gyeongnam.go.kr → 부패공익신고센터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
9.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

- 가. 본 입찰은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상생협력법)」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(택1)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, 공고에 첨부된 '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* 상생결제 약정은행(상품명) : 농협은행(NH다같이성장론), 경남은행(BNK상생결제론)
- * 문의처 : 상생결제 콜센터(대표번호 : 국번없이 1670-0833)
- 다.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10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나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3조에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【붙임】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- 다.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라.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,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. 재입찰 시행

-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(www.g2b.go.kr) 및 우리도
홈페이지(www.gyeongnam.go.kr)에 게재됩니다.
- 바.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
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.
- 사. **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** 해주시기 바라며, 입찰 및 계약은
회계과(055-211-3826)로, 기술사항은 수자원과(055-211-67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10.

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

[붙임1]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

○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(예시) (단위 : 일수)

성명	전체 경력 (단위:일)	건설사업관리				설계		
		건진법	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	상주기술자	기술지원기술자	사업책임	분야별 책임기술자	분야별 참여기술자
		주택법	총괄감리원	상주감리원, 상주감리원(신규)	비상주감리원			
		건축법	책임기술자	분야기술자, 상주(건축사보)기술자	기술지원기술자			
A	1,000		200	200	200	100	100	200
B	1,200		100	300	400	100	100	200
C	1,500		100	100	300	300	300	400

설계 평가(2010.2.3. 이후 경력만 산정)

$$\frac{100 + 100 + (200 \div 2) + 100 + 100 + (200 \div 2) + 300 + 300 + (400 \div 2)}{(1000 + 1200 + 1500)} = \frac{1400}{3700} = 0.3783783....$$

⇒ 37.837.....% 이므로 1점 (30% 이상 1점, 30%미만~20%이상 0.5점)

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
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

당사는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.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·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.

- 1. 「관세법」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
- 2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,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
- 3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,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
- 4.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·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
- 5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·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

20 . .

서약자 : 00회사 대표 000(인)

경상남도 (분임)재무관 귀하